

의안번호	제호
의결	년 월 일
연월일	(제회)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2년 1월 18일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월 18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 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"으로 변경
 - "선임 및 운영"을 "수·선임·운영"으로 변경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조문 변경 (안 제2조)
 -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최소범위 "5명 이상"을 "7명 이상"으로 변경
 - 의원은 "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"를 "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"로 변경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(안 제3조제3항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"로 변경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제3항”으로, “선임 및 운영”을 “수·선임·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 전단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3분의1”을 “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<u>선임 및 운영</u>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<u>5명</u>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 이 경우 의원은 위원 총수의 <u>3분의1</u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· ② (생략) ③ 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른다. ④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,----- ----- ----- <u>수·선임·운영</u> ----- ----- --.</p> <p>제2조(위원의 정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7명</u> ----- -----. ----- <u>3분의 1</u> 이하로 하며, <u>3명</u>---.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---. 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73조(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